

2023년 복지대상자 급여 선정기준

1. 국민기초생활보장 : 각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 /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(부양비 부과)

※ 주거급여/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
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2023년 기준중위소득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
생계급여 (중위소득 30%)	623,368	1,036,846	1,330,445	1,620,289	1,899,206	2,168,394
의료급여 (중위소득 40%)	831,157	1,382,462	1,773,927	2,160,386	2,532,275	2,891,193
주거급여 (중위소득 47%)	976,609	1,624,393	2,084,364	2,538,453	2,975,423	3,397,151
교육급여 (중위소득 50%)	1,038,946	1,728,077	2,217,408	2,700,482	3,165,344	3,613,991
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(부양 능력 없음 기준)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
기본재산액	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: 서울 9,900만원, 경기 8,000만원, 광역·세종·창원 7,700만원, 그외지역 5,300만원 ○ 부양의무자 : 대도시 22,800만원, 중소도시 13,600만원, 농어촌 10,150만원					

2. 차상위장애수당(장애아동수당)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/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

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소득인정액	1,038,946	1,728,077	2,217,408	2,700,482	3,165,344	3,613,991
기본재산액	○ 서울 9,900만원, 경기 8,000만원, 광역·세종·창원 7,700만원, 그외지역 5,300만원					

※ 장애수당 : 6만원(시설3만원) ※ 장애아동수당 : 기초중증 22만원 / 차상위중증 17만원 / 경증 공통 11만원

3. 차상위본인부담경감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/ 실제소득으로 부양능력유무만 판단 (부양비미부과)

※ 부양의무자 기준: 기준중위소득의 120%(단, 차상위 대상자 수 1인 추가시마다 10% 가산)

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소득인정액	1,038,946	1,728,077	2,217,408	2,700,482	3,165,344	3,613,991
부양의무자 기준 (기준중위소득 120%)	2,493,470	4,147,386	5,321,779	6,481,157	7,596,826	8,673,577
기본재산액	○ 대도시 1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					

4. 차상위자활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/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

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소득인정액	1,038,946	1,728,077	2,217,408	2,700,482	3,165,344	3,613,991
기본재산액	○ 대도시 1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					

5. 차상위계층확인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/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

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소득인정액	1,038,946	1,728,077	2,217,408	2,700,482	3,165,344	3,613,991
기본재산액	○ 서울 9,900만원, 경기 8,000만원, 광역·세종·창원 7,700만원, 그외지역 5,300만원					

※ 기준제도 미해당자에 대하여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책정하여 타부처 사업, 지자체 시책, 민간사업 등 연계 추진

6. 한부모가족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/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

소득인정액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한부모(60%) 한부모가족발급(60%)	2,073,693	2,660,890	3,240,578	3,798,413	4,336,789	4,668,355
청산년(한부모)가족(68%)	2,246,501	2,882,630	3,510,627	4,114,947	4,698,188	5,057,385
청산년(한부모)특별급(72%)	2,488,432	3,193,068	3,888,694	4,558,095	5,204,146	5,602,026
기본재산액	○ 서울 9,900만원, 경기 8,000만원, 광역·세종·창원 7,700만원, 그외지역 5,300만원					

※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: 학비+만18세미만 아동양육비 20만원+[시비지원 : 교육교재비(초·중등 5만원 / 고등 7만원)+가계지원비 5만원]

7. 긴급복지지원 사후조사 기준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소득인정액	1,558,419	2,592,116	3,326,112	4,050,723	4,748,016	5,420,986
재산기준액	○ 대도시 24,100만원, 중소도시 15,200만원, 농어촌 13,000만원 (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,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)					

8. 기초연금 : 소득인정액 이하/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

가구구분	선정기준액	비고
단독	2,020,000	근로소득공제(개인): 108만원+30%추가공제 일반재산(가구): 1억 3천 5백만원 금융재산(가구): 2천만원
부부	3,232,000	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 지역연금 대상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(예외: 직역연금 특례 대상자)

단독 30,000원~323,180원, 부부 6만원~517,080원

9. 장애연금 : 소득인정액 이하/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

가구구분	선정기준액	비고
단독가구	1,220,000	근로소득공제(개인): 88만원+30%추가공제 -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
부부가구	1,952,000	일반재산(가구): 1억 3천 5백만원 금융재산(가구): 2천만원 지역연금 대상자 신청대상에서 제외 (예외: 직역연금 특례 대상자)

※장애연금지급액: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

단독 3만원~323,180원, 부부 6만원~517,080원

※장애연금 부가급여 금액

구분	만 18세~64세	65세 이상
기초생활보장수급자 (일반재가/ 생계, 의료수급)	8만원	38.75만원
보장시설수급자 (일반/ 생계, 의료수급)	-	0원
보장시설수급자 (급여특례/ 생계, 의료수급)	-	7만원
차상위 (일반/ 주거, 교육수급) ※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제외	7만원	7만원
차상위 (급여특례/ 주거, 교육수급) ※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제외	-	14만원
차상위초과(일반)	2만원	4만원